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899
- 발 의 자 : 김혜련 의원(찬성자 16명)
- 발 의 일 : 2017년 6월 9일
- 회 부 일 : 2017년 6월 13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도 명시하여 줄 필요 있음.

3. 주요내용

- 가.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함 (안 제8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 6. 16. ~ 6. 23)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4항 신설) 하여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에도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u><신 설></u> ④ ~ ⑥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u>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서울시에 189개의 위원회(2017년 7월 기준)가 있으며, 전년 대비 4개 위원회가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 현재
위원회수	116	113	103	127	136	148	152	185	189
증 감	△6	△3	△10	24	9	12	4	33	4

- 서울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204명(37.7%), 2016년에는 1,302명(38.6%)이었으며,

-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위원회(189개)의 위촉위원은 총 3,688명 중 남성이 2,199명(59.6%), 여성이 1,489명(40.4%)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 위원회별로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9개 위원회 대비 70개 위원회(37%, 2017년7월 기준)는 여성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1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참조).

〈위원회 구성〉

(단위 :개, 명, %)

연도	위원회 수	총 계	당연임명직	위촉직 위원			비고
				소계	남성	여성	
2017년 7월	189	4,270	582	3,688	2,199	1,489	* 여성비율 40%

연도	총 계	당연 임명직	위 촉 직								위 촉 직	
			소 계	학 계	전문가	민간기업	시민 사회단체	시의원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기 타 (일반시민 등)	여성	장애인
2016	3,911	536	3,375	834	1,033	209	399	216	282	402	1,302	52
			(100%)	(24.7%)	(30.6%)	(6.2%)	(11.8%)	(6.4%)	(8.4%)	(11.9%)	(38.6%)	(1.5%)
2015	3,661	467	3,194	879	687	308	372	185	284	479	1,204	47
			(100%)	(27.5%)	(21.5%)	(9.6%)	(11.6%)	(5.8%)	(8.9%)	(15.0%)	(37.7%)	(1.5%)

- 안 제8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 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2015년 7월 1일 시행)시 부칙¹⁾으로 동 조항 관련 특례 규정을 두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도 법과 같이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성을 위한 특례규정 또는 적용례 규정에 관한 부칙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1)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참고 자료 1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70개)	위원구성(2017.7 기준)								소관부서
		소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여성비율	
						소계	남	여		
1	DMC기획위원회	14	13	1	-	13	12	1	8%	경제정책과
2	감사청구심의회	11	9	1	1	9	7	2	22%	시민감사 음부조만 위원회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	248	2	-	248	204	44	18%	기술심사 담당관
4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50	48	2	-	48	39	9	19%	기술심사 담당관
5	건축위원회	144	141	3	-	141	112	29	21%	건축기획과
6	건축정책위원회	27	19	8	-	19	12	7	37%	도시공간 개선반
7	경제민주화위원회	19	14	5	-	14	9	5	36%	소상공인 지원과
8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원회	24	22	-	2	22	14	8	36%	임대주택과
9	공동구협의회	13	1	6	6	1	1	-	0%	도로시설과
10	공무국외여행심사위 원회	7	3	4	-	3	2	1	33%	인력개발과
11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1	9	1	1	9	6	3	33%	조사담당관
12	공직자윤리위원회	11	9	2	-	9	6	3	33%	조사담당관
13	교통위원회	24	20	4	-	20	13	7	35%	교통정책과
14	국어바르게쓰기위원 회	15	11	4	-	11	7	4	36%	시민소통 담당관
15	규제개혁위원회	15	12	1	2	12	8	4	33%	법무담당관
16	근로자권익보호위원 회	14	13	1	-	13	8	5	38%	노동정책 담당관
17	금융산업정책위원회	20	20	-	-	20	18	2	10%	투자유치과
18	기술교육원통합운영 위원회	19	13	6	-	13	10	3	23%	일자리정책 담당관
19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8	15	3	-	15	10	5	33%	대외협력

연번	위원회명 (70개)	위원구성(2017.7 기준)								소관부서
		소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소계	남	여	여성비율	
										담당관
20	노사민정협의회	10	8	2	-	8	7	1	13%	노동정책 담당관
21	대외협력기금국제협 력계정운영위원회	9	5	4	-	5	4	1	20%	국제교류 담당관
22	도로굴착복구기금운 용심의회	12	7	2	3	7	5	2	29%	도로관리과
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5	22	1	2	22	17	5	23%	도시관리과
24	도시계획위원회	29	25	4	-	25	23	2	8%	도시계획과
25	도시공원위원회	25	23	1	1	23	14	9	39%	공원조성과
26	도시농업위원회	15	14	1	-	14	9	5	36%	도시농업과
27	도시디자인위원회	25	23	2	-	23	15	8	35%	도시공간 개선반
28	도시재정비위원회	25	21	1	3	21	14	7	33%	주거사업과
29	물순환시민위원회	39	38	1	-	38	23	15	39%	물순환정책과
30	민간임대주택통합심 의위원회	22	20	2	-	20	13	7	35%	임대주택과
31	사업조정심의회	10	8	2	-	8	5	3	38%	소상공인 지원과
32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	33	29	4	-	29	25	4	14%	건축기획과
33	사회복지기금노인복 지계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	6	4	2	-	4	3	1	25%	어르신복지과
34	사회성과보상사업심 의위원회	11	11	-	-	11	7	4	36%	사회적경제 담당관
35	사회적경제위원회	15	12	3	-	12	8	4	33%	사회적경제 담당관
36	사회투자기금운용심 의위원회	14	11	3	-	11	8	3	27%	사회적경제 담당관
37	생활권발전협의회	11	8	3	-	8	7	1	13%	대외협력 담당관
38	서울시립대학교운영 위원회	14	9	5	-	9	6	3	33%	조직담당관
39	세빛등등섬사업공공성 확보심의위원회	7	6	1	-	6	5	1	17%	공원사업과

연번	위원회명 (70개)	위원구성(2017.7 기준)								소관부서
		소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소계	남	여	여성비율	
40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9	6	3	-	6	4	2	33%	38세금징수과
41	소방기술심의회위원회	9	8	1	-	8	5	3	38%	예방과
42	소청심사위원회	17	17	-	-	17	11	6	35%	법무담당관
4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5	11	4	-	11	8	3	27%	도시활성과
4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8	23	5	-	23	20	3	13%	상황대응과
45	안전관리위원회	37	23	14	-	23	21	2	9%	도로계획과
46	역사도시서울위원회	22	18	4	-	18	13	5	28%	역사문화재과
47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11	8	3	-	8	5	3	38%	예산담당관
4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5	13	2	-	13	8	5	38%	도시빛정책과
49	인사위원회	37	23	2	12	23	16	7	30%	인사과
50	일자리위원회	27	22	5	-	22	14	8	36%	일자리정책담당관
51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0	14	16	-	14	11	3	21%	하천관리과
52	전통사찰보존위원회	9	8	1	-	8	5	3	38%	문화정책과
53	정보화전략위원회	26	21	5	-	21	18	3	14%	정보기획담당관
54	좋은빛위원회	40	38	2	-	38	23	15	39%	도시빛정책과
55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5	10	5	-	10	8	2	20%	주택정책과
5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7	3	-	7	5	2	29%	소상공인지원과
57	지방분권협의회	18	18	-	-	18	16	2	11%	조직담당관
58	지적재조사위원회	10	8	2	-	8	5	3	38%	토지관리과
59	청계천시민위원회	28	23	5	-	23	16	7	30%	하천관리과
60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9	8	1	-	8	5	3	38%	체육정책과
61	택시정책위원회	20	18	2	-	18	14	4	22%	택시물류과
62	한강시민위원회	36	31	5	-	31	19	12	39%	기획예산과

연번	위원회명 (70개)	위원구성(2017.7 기준)								소관부서
		소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소계	남	여	여성비율	
63	한양도성세계유산등 재추진위원회	34	22	12	-	22	19	3	14%	한양도성도감
64	한옥위원회	34	32	1	1	32	20	12	38%	한옥조성과
65	행정심판위원회	34	29	5	-	29	20	9	31%	법무담당관
6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	13	2	-	13	8	5	38%	환경정책과
67	후생복지심의위원회	9	8	1	-	8	6	2	25%	인력개발과
68	희망온돌시민기획위 원회	28	28	-	-	28	18	10	36%	희망복지 지원과
69	도시재생위원회	30	26	4	-	26	19	7	27%	재생정책과
70	서울도시건축비엔날 레운영위원회	16	8	8	-	8	6	2	25%	도시공간 개선반